

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:(1)+(2)+(3)+(4)

구분	비고
(1) 임대료	일반적인 경우: 약정액 선세금의 경우 해당연도 총수입금액: 선세금 ×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/총 임대계약기간 월수

구분		비고
	주지	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
	계산 대상	부동산,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자 --> [비교] 법인: 추계시 모든 법인, 추계 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만 계산
(2) 간주 임대료	계산 배제	주택(고가주택 포함)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나,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(단, 3주택 이상 판정시 85제곱미터 이 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.12.31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	계산 방법	아래 산식에 의함

구분	비고
(3) 관리비수입	<p>① 임대료외의 청소, 난방과 관련한 관리비: 충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제 들어간 경비는 필요경비로 차감함.</p> <p>② 전기료, 수도료 등 공공요금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칙: 충수입금액에 포함 안 함(납입대행에 불과) - 초과징수액: 충수입금액에 포함함(단, 기업회계상 매출액은 아니므로 접대비 한도계산시의 수입금액에는 포함 안 함)
(4) 보험차익	<p>부동산임대 사업용 자산의 소실로 인한 보험차익을 충수입금액에 산입함(단, 관세이연목적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가능(결산조정만 가능))-->[비교]법인은 신고조정도 가능</p>

※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

1)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(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)

구분	비고
주 계 의 경우	(보증금-3억원)의 적수 × 60% × 정기예금이자율 × 1 365(또는 366)
주 계 외 의 경우	(보증금-3억원)의 적수 × 60% × 정기예금이자율 × 1 365(또는 366) -금융수익(수입이 자, 수입배당금)

2) 위 '1)' 외의 경우(주택 외의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임대의 경우)

구분	비고
주택의 경우	$\frac{\text{보증금 적수} \times \text{정기예금이자율} \times 1}{365(\text{또는 } 366)}$
주택 외의 경우	$\frac{(\text{보증금 적수} - \text{건설비 적수}^*) \times \text{정기예금이자율} \times 1}{365(\text{또는 } 366)} - \text{금융수익}$

* 토지가액은 제외